수익자의 총수가 1인인 펀드의 자본시장법상 해지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는 그 정의상 2인 이상의 투자자를 둘 것이 요구되므로(제6조 제5항[1]), 일반적으로는 펀드의 수익자가 1인에 불과한 경우를 상정할 수 없습니다. 자본시장법은 별도의 예외사유[2]가 인정되는 사안을 제외하고는,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로 하여금 투자신탁을 지체 없이 해지하도록 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3]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192조 제2항 제5호. 참고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 제4호에 따르면, 위 '지체 없이'는 사실상 1개월을 의미함[4]).

그런데 펀드의 설정 당시, 또는 펀드를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간 동안 수익자가 1인이 아닌 정상적인 펀드였으나 그 운용 과정에서 우연한 계기로 수익자가 1인만 남게 되는 경우(가령, 수익자 1인을 제외한 다른 모든 수익자가 펀드의 환매를 진행한 경우, 선순위인 수익권의 상환 및 지급이 모두 완료되어 그 결과 최후순위인 수익자 1인만 남게 되는 경우 등)에도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해지・보고의무를 1개월 이내에 이행하여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제5호(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의 해지사유에 대해 '수익자가 2인인 상태에서 수익자 1인이 환매를 진행하여 동 펀드가 단독수익자펀드가 되는 경우' 등 당초 수익자가 1인인 펀드가 아니었으나 그 운용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익자 1인만 남게 되는 사안에 대하여도 해지・보고의무의 이행을 그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5]

---

[1] 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⑤ 제4항에서 "집합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후략)

[2] 본 뉴스레터 하단 참조. 참고로 연기금 등에 대하여는 예외사유에 의해 사실상 단독수익자펀드가 폭넓게 허용되고 있습니다.

[3] 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해지사실의 보고접수를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게 됩니다.

[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5]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7. 11. 23.자 유권해석 17042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수익자) 수 산정 방법

법무법인[유] 지평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그런데 이러한 해지・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그에 앞서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재산을 지체 없이 매각하여 최후의 수익자 1인에게 상환금・이익금을 지급 완료하는 등 펀드의 청산까지 종결지어야 한다는 것인지, 만일 투자신탁재산을 즉시 매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가령,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소유권) 자체를 신탁원본 교부의 의미로 신탁업자 명의에서 최후의 수익자 1인 명의로 지체 없이 이전하는 등의 조치까지 취하여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자본시장법 제192조에 따른 투자신탁의 해지・보고와 관련된 '투자신탁의 해지'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이익금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 투자신탁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자신탁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며, 해지, 즉 투자신탁 계약의 종료시점까지 이익금의 분배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 자체로 자본시장법 제192조 제2항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을 채택하고 있습니다.[6]

이러한 태도에 비추어 본다면 집합투자업자는 펀드의 해지・보고의무를 상환금・이익금의 지급 완료 등 펀드의 청산에 앞서서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으며, 펀드의 재산이 여전히 부동산 등 실물자산 형태로 신탁업자에게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펀드의 해지의무나 그 보고의무의 이행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 펀드는 '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잔여 법률관계가 청산되지는 아니한 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단, 신탁계약은 통상 최초부터 펀드의 청산 절차에 관한 합의도 반영하여 체결함을 고려하면, 신탁계약의 내용은 여전히 펀드의 청산이나 투자신탁재산의 처분・정리의 관점에서 당사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은, 집합투자업자의 펀드 해지・보고의무의 이행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아직 투자신탁재산의 처분과 정리, 즉 실질적・경제적 청산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펀드의 시스템상 등록 자체는 그대로 유지해두는 유보적인 대응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유) 지평 리츠・펀드팀

이준혁 변호사	T. 02-6200-1962 E. joonlee@jipyong.com
이석재 변호사	T. 02-6200-1960 E. leesj@jipyong.com
유정민 변호사	T. 02-6200-1861 E. jmyu@jipyong.com

[6]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8. 5. 23.자 유권해석 180095, 투자신탁의 해지 및 금융위원회 보고

▌참고자료▐

수익자 총수 1인인 펀드의 해지・보고의무의 근거 및 해당 펀드를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제6조 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금융투자업) ⑥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은 금전 등을 그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그 자에게 귀속시키는 행위는 집합투자로 본다. 1. 「국가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에 준하는 외국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익자가 법 제6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1의2.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나.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의3. 수익자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신탁인 경우 1의4. 수익자가 제231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경우 2. 삭제 <2018.9.28.>	제7-11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투자신탁의 요건) ① <삭제 2018. 9. 28.> ② 영 제224조의2제1호의2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금융투자업자 또는 법 제324조에 따른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224조의2 제1호의2 각 목에 해당하는 수익자(이하 이 항에서 "수익자"라 한다)의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금의 통합운용에 대한 별도의 승인을 받아 직접 또는 다른 집합투자업자를 선임하여 설정한 투자신탁일 것 2. 수익자로부터 모은 금전 등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것 **③ 영 제224조의2제1호의2마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10조제2항제9호 및 제10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법무법인[유] 지평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협동조합중앙회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5.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7.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8.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 제25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보험회사가 설정한 투자신탁 10.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11. 그 밖에 제7항에 따른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자로부터 금전등을 모아 설립한 기구 또는 법인 등으로서 효율적이고 투명한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 대통령령(*참고: 하위시행령 없음)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⑥ 법 제6조제6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가. 「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나.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다. 「교정공제회법」에 따른 교정공제회 라. 「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바.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사.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아.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자.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운용자산이 2조원 이상이거나 가입자가 10만명 이상인 공제회 또는 공제조합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중략) **9. 증권금융회사** ③ 법 제9조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금융투자업자와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전문투자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중략) **5. 협회** **6. 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6의2.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 **7. 거래소**

법무법인[유] 지평 서울 중구 세종대로 14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T. 02-6200-1600 F. 02-6200-0800 E. master@jipyong.com
순천 | 부산 | 상하이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 프놈펜 | 비엔티안 | 양곤 | 모스크바